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발의)

의 안 번호 461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 한준호 의원

찬 성 자 : 16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 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회의) ① (생 략) |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 ②4인 이상 |
|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 | 출석위원 |
| |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